

한경국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규정 제85호) 제정 2023. 3. 1.

(규정 제115호) 일부개정 2023. 8. 25.

(규정 제174호) 일부개정 2024. 5.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경국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20조와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성폭력”이란 「형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차별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성·종교·장애·나이·인종·출신국가·사회적 신분·용모 등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폭력행위: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강요, 욕설·폭언·비하하는 발언, 모욕, 폭행과 상해, 협박과 공갈, 따돌림 등으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신체적·정신적 안녕 및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대리인”이란 당사자가 지정하여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권 등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누설하거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나. 피해자 등에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와 해결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다.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왜곡시키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라. 보복적으로 부당한 징계 또는 평가를 하거나 교육·학습·연구·업무와 관련한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조직

제4조(조직) ①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총장 직속기구로 두며, 인권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센터에는 인권지원팀과 양성평등지원실을 둔다.<신설 2024. 5. 27.>

⑤ 센터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비치한다.

제2절 인권지원팀

제5조(인권지원팀 기능) 인권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제1호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학교 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고충처리 업무 지원) ① 센터장은 소속 직원의 인권침해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직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충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직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센터 내에는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양성평등지원실<신설 2024. 5. 27.>

제7조(양성평등지원실 기능) 양성평등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제1호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인권위원회

제8조(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설치)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9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촉 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 및 인권침해 등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건의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절차와 조치
4. 제2호의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센터장에게 보충 및 재조사를 요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당사자가 아닌 사건의 처리에 관한 회의소집 시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학생 위원을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정족수 산정 시 학생 위원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2조(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 등이 제1항에 해당되거나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등은 제1항의 사유 이외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위원장이 기피신청 대상이 되거나 회피 신청을 할 경우 총장이 가부를 결정한다.<신설 2024. 5. 27.>

제4장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제1절 신고·조사 및 처리

제13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신고 일시 및 피해 내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타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신고된 사건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6조 제5항의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4. 조사 절차를 준수하여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5. 신고된 내용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에 센터장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접촉, 명예훼손, 불이익, 차별 및 그 밖의 인권침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퇴거, 격리 등의 공간분리 조치
3. 피해자,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이를 사유로 총장에게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원 사건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때 징계의 가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를 개시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 하여야 하며, 조사 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신고 사건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하며, 조사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센터장은 6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일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17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및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 또는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별도의 구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중재 및 인권위원회 회부) ① 신고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장은 중재할 수 있다.

② 중재할 경우, 센터장은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감독한다.

③ 센터장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조치 및 징계 요청) ①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발 방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의 결정 및 집행 완료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이나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가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대리인, 신고인 및 참고인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3. 피해자나 그 대리인, 신고인 및 참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원을 노출한 경우
4. 재범인 경우
5. 피해자나 그 대리인, 신고인 및 참고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의 요구 또는 협박·회유 등을 통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재심의) ① 신고인 및 피해자는 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의 신청 사유서를 센터에 제출하고 재심의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 주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재심의 신청은 각 당사자당 1회에 한정하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심의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인권위원회가 재심의의를 결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센터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② 당사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다.

③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동석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는 조사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제23조(재발 방지 조치) 센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 교육,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및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피해자보호

제24조(피해자보호 및 비밀 유지의 의무)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센터장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센터와 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치료지원 안내,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람이 이 대학교의 구성원일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수강, 학점, 졸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학습권이나 근로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규정 제85호, 2023. 3. 1.>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5호, 2023. 8.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4호, 2024. 5.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피해자의 대응에 대한 피신고인의 반응

⑦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규정에 따른 가해자 처벌 등

법적 대응

개인적 수준의 대응

기타 ()

2. 증인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갑질행위 또는 불이익을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서류

-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신고서 뒷면에 첨부하고 서류 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한경국립대학교 인권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진 술 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번 또는 직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학생일 경우 기재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 한경국립대학교 인권센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부족시 별지를 이용해 상세 기술				
한경국립대학교 인권센터장 귀하				

재심의 신청 사유서

1.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연락처	휴대폰	유선	

2. 재심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사 및 의결사항 내용

3. 재심의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4. 인권센터 인권위원회의 의결서 등이 도달한 날

한경국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1조(재심의)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경국립대학교 인권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